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125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
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
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, 노인의 위생·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설인 『서울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』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사용대상자, 사용시간, 사용료 등(안 제3조 ~ 제7조)
- 위탁운영, 수탁자 선정기준, 수탁자의 의무 등(안 제8조 ~ 제14조)
-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(안 제15조 ~ 제18조)

3. 의견제출

○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FAX: 02-3396-8732, 전자우편 : peartop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문의처 : 서울 중구 사회복지과 배상대 ☎02-3396-5368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설”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설치된 목욕탕 및 헬스장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“거동불편자”란 스스로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대상자)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65세 이상인 자(단, 거동불편자는 보조자를 포함)
 2. 그 밖에 서울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시간)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을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)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6조(이용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2.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3.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4.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
5.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7조(손해배상)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·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, 위탁기간,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지원)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탁자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
3.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,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 수립)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탁계약의 해지)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2.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,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,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·검사하는 등의 지도·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변상책임)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·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안전관리)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전기사업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소방기본법」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